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참 고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최 용 호(02-2100-2601)	담 당 자	김 민 석 사무관 (02-2100-2518)	
	금감원 공시심사실장 민 경 찬(02-3145-8420)		김 재 형 팀 장 (02-3145-8470)	

제 목 :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

1 조치 개요

- 증권선물위원회(‘증선위’)는 5. 4(수)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**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**에 대해 다음과 같이 **과징금 부과**를 의결하였습니다.
 - 위반자는 (주)티시스템과 (주)필로시스로, 이들은 2016. 5월 ~ 2018. 11월 기간 중 **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**한 사실이 있습니다.
 -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**2개 회사**에 대해 과징금 **총 7,180만원**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. (📎 별첨)

2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

- ① (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) 비상장법인 (주)티시스템은 2016. 5. 23. 보통주 248,000주(12.4억원)을 33인에게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인이고 그 합계액이 36억원 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

⇒ **(유의사항)**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(모집)받은 일반투자자의 수가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이고,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,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.

② (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) 비상장법인 (주)필로시스는 2018. 1. 17.부터 2018. 11. 19.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(4회, 6,450백만원)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(3회, 9,498백만원) 발행을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('18.12.31.)하였습니다.

⇒ (유의사항)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(CB)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(BW)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 대응 방안

-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,
 -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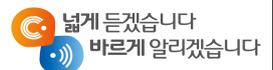
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00-2543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 - 인터넷 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www.cybercop.or.kr>) 접속
 - 전화 : 1332
- ☞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
 - 인터넷 :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(<http://stockwatch.krx.co.kr>) 접속
 - 전화 : 1577-0088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연번	위반자	위반내용	조치
1	(주)티시스템	-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14,800,000 원
2	(주)필로시스	-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	- 과징금 57,000,000 원